

2007년 주요 세목별 가산세 제도

<목 차>

I. 2007년 가산세제도 개편 주요 내용
1. 신고불성실 가산세
2. 납부불성실 가산세
3. 가산세 한도제 신설
4. 가산세의 감면 등
II.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개정 규정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III. 법인세법상 가산세
IV. 소득세법상 가산세
V.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I. 2007년 가산세제도 개편 주요 내용

1. 신고불성실 가산세

개별세법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함.

(1) 가산세율

구 분	종 전			개 정		
무신고	세 목	세 율		세목	세 율	
					부당	일반
	소득세 · 상속세	20%		모든 세목	40%	20%
	법인세	20% · 30%				
기타 세목	10%					
과소신고	세 목	부당	일반	모든 세목	40%	10%

	법인세	20% · 30%	10%			
	소득세 · 상속세	20%	10%			
	기타 세목	10%	10%			

(2) 부당한 신고위반(부당한 방법)

구 분	중 전	개 정
고의성이 있는 경우	· 실물거래없이 비용 과다계상 · 매출금액을 고의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한 금액 · 기타 익금 고의누락 및 손금허위 계상금액 · 매매거래가액 · 재산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증빙 제출 · 통모에 의한 저가 평가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함(국기법 §47의 2 ② 및 국기령 §27 ②).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괴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 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고의성 여부 불문	·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 과대경비 등 손금불산입액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 감면배제법인이 감면적용하여 익금산입한 금액	

2. 납부불성실 가산세

개별세법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함.

세 목	중전 가산세액	세 목	개정 가산세액
인지세 (인지접부대상)	미접부 인지세액 × 300%	인지세 (인지접부대상)	좌 동
교육세 · 농특세	미납세액 × 10%	그 외 세목	미납세액 × 경과일수 × 가산세율
그 외 세목	미납세액 × 경과일수 × 가산세율		

3. 가산세의 감면 등(국기법 §48)

(1) 100% 감면

감면사유	종 전	개 정
•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인 정	인 정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례로 인정	법제화

(2) 50% 감면

감면사유	종 전	개 정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감면 ^(*1)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 ^(*2)
•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는 지연제출시 제출불성실가산세 감면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감면 ^(*3)

(^{*1}) 2007. 1. 1. 이후 최초로 기한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2}) 2007. 1. 1. 이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

(^{*3}) 2007. 1. 1. 이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신고·제출·가입·등록 또는 개설을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

4. 가산세 한도제 신설(국기법 §49, 국기령 §29의 2)

(1) 의 의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 → 2007. 1. 1. 이후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최초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①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 동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조특법 §30의 5 ⑤)
: 동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우대자료미제출가산세(조특법 §90의 2 ①)
: 소득세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II.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개정 규정

(1)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

200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시,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등 4가지)는 모든 국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세로서 국세기본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함. 동 개정규정(국기법 §47의 2 ~ §47의 5)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법률 제8139호, 부칙 §1).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세목별 적용시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세목별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2007년 1월 1일(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1월 1일) 전에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개정되는 각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름(부칙 §7, §16).

세 목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적용시기
소득세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	200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농특세 포함)	2007. 1. 1. 이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농특세 포함)	200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농특세 포함)	2007. 1. 1. 이후 최초로 해산·합병·분할 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200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		2007. 1. 1.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 부터 적용
특별소비세(농특세 포함), 교통·에너지·환경 세 및 주세		2007. 1. 1. 이후 최초로 반출·출고·판매 하거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부터 적용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		2007. 1. 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 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농특세 포함)		2008. 1. 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 는 분부터 적용
교육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 과되는 경우	200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 세액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경우	2007. 1. 1. 이후 최초로 반출·출고·판매 하거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부터 적용
농어촌특 별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경우	2007. 1. 1. 이후 최초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취득세·등록세 또는 레저세를 본 세로 하는 경우	2007. 1. 1.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 등록하거나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경우	2007. 1. 1.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 터 적용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 · 에너지·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2007. 1. 1.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 터 적용

2. 국제기본법상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국기법 §47의 2)

1) 일반무신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일반무
신고가산세액은 다음과 같음.

복식부기의무자·법인	Max (① 산출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	------------------------------------

그 외	산출세액 × 20%
-----	------------

2) 부당무신고

납세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납부세액. 이하 “과세표준”이라 함)이 있는 경우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은 다음과 같음.

복식부기의무자 · 법인 (① + ②)	①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Max (㉠, ㉡)
	㉠ $\frac{\text{부당무신고과세표준}}{\text{무신고과세표준}} \times \text{산출세액} \times 40\%$
	㉡ $\text{부당무신고수입금액} \times 0.14\%$
	② 위 ‘①’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Max (㉢, ㉣)
그 외 (① + ②)	㉢ $\frac{\text{무신고과세표준} - \text{부당무신고과세표준}}{\text{무신고과세표준}} \times \text{산출세액} \times 20\%$
	㉣ $\text{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 \times 0.07\%$
	①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frac{\text{부당무신고과세표준}}{\text{무신고과세표준}} \times \text{산출세액} \times 40\%$
	② 위 ‘①’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frac{\text{무신고과세표준} - \text{부당무신고과세표준}}{\text{무신고과세표준}} \times \text{산출세액} \times 20\%$

(2) 과소신고가산세(국기법 §47의 3)

1) 일반과소신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은 다음과 같음.

과소신고과세표준 과세표준	× 산출세액 × 10%
------------------	--------------

2) 부당과소신고

납세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은 다음과 같음.

복식부기의무자 · 법인 (① + ②)	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text{Max} (㉠, ㉡)$ ㉠ $\frac{\text{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text{과세표준}} \times \text{산출세액} \times 40\%$ ㉡ $\text{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times 0.14\%$
	② 위 '①'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frac{\text{과소신고과세표준} - \text{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text{과세표준}} \times \text{산출세액} \times 10\%$
그 외 (① + ②)	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frac{\text{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text{과세표준}} \times \text{산출세액} \times 40\%$
	② 위 '①'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frac{\text{과소신고과세표준} - \text{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text{과세표준}} \times \text{산출세액} \times 10\%$

(3)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기법 §47의 4)

1) 일반초과환급신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액은 다음과 같음.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times 10\%$

2) 부당초과환급신고

납세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의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액은 다음의 ①과 ②를 합한 금액임.

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frac{\text{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text{과세표준}} \times \text{환급신고한 세액} \times 40\%$$

과세표준	
② 위 '①'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과세표준 -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 환급신고한 세액 × 10%
과세표준	

(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국기법 §47의 5)

1) 과소납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의 과소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다음과 같음.

인지세의 경우 (인지첨부대상)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300%		
그 외의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frac{3}{10,000}$

2) 초과환급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액은 다음과 같음.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frac{3}{10,000}$
--------------	---	--	---	--------------------

III. 법인세법상 가산세

구 분		주 요 내 용
무기장가산세 (법법 §76 ①)	사 유	내국법인(비영리 내국법인은 제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 세액	Max $\left[\begin{array}{l} \text{①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외)} \times 20\% \\ \text{② 수입금액} \times 0.07\% \end{array} \right]$
원천징수불성 실가산세	사 유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가 원천징수 하였거나 원천징수 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

(법법 §76 ②)		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
	가산 세액	Max Min ① 미납부·미달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0.03% ② 미납부·미달납부세액 × 10% ③ 미납부·미달납부세액 × 5%
결합재무제표 미제출가산세 (법법 §76 ④)	사 유	법인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 결함대차대조표, 기업집단 결함손익계산서 및 내부거래상계명세서(‘기타 현황 등에 관한 명세서’는 제외)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 세액	Max ①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결정·경정한 산출세액 × 2% ② 수입금액 × 0.008%
증빙불비가산 세 (법법 §76 ⑤)	사 유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법령 §158 ①)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법법 §116 ② 각 호)중 어느 하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 세액	증빙서류 미수취금액 × 2%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 산세 (법법 §76 ⑥)	사 유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법령 §120 ⑤)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세액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2%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1%)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법법 §76 ⑦, ⑧)	사 유	법인세법 제120조·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법령 §120 ⑥)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세액	미제출·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 × 2%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1%)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사 유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제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②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①의 규정을

(법법 §76 ⑨)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 ①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소령 §211 ① 1호 내지 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②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③ 법인세법 제12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2007. 1. 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액	미교부·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분의 공급가액 × 1%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0.5%)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법법 §76 ⑩)	사 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단, ②의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보고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또는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
	가산세액	①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 1% ②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 × 0.1%
신용카드매출 전표 발급불성실가 산세 (법법 §76 ⑪)	사 유	신용카드가맹점이 법인세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2007. 7.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액	①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Max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 × 5% ② 건별 5,000원
현금영수증 미가맹·미발 급가산세 (법법 §76 ⑫)	사 유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2007. 7.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부터 적용

	가산 세액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times 0.5\%$ ②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text{Max}(\text{㉠}, \text{㉡})$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 $\times 5\%$ ㉡ 건별 5,000원
--	----------	---

IV. 소득세법상 가산세

구 분		주 요 내 용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소법 §81 ①, ②)	사 유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소령 §147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른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
	가산 세액	미제출·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 $\times 2\%$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1%)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 세 (소법 §81 ③)	사 유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 ①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소령 §211 ① 1호 내지 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다만,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③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2007.1.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

	가산 세액	(단, ② 및 ③의 경우 제출기한 미교부·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분의 공급가액 $\times$ 1%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0.5%)
증빙불비가 산세 (소법 §81 ④)	사 유	사업자[소규모사업자(소령 §132 ④ 각 호)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소령 §143 ③)는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 서 또는 계산서(소법 §160의 2 ② 각 호)중 어느 하나를 수취하지 아니 한 경우 <i>→ 대상자 관련 개정규정은 2007. 7.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i>
	가산 세액	증빙서류 미수취금액 $\times$ 2%
영수증수취 명세서 미제출가산 세 (소법 §81 ⑤)	사 유	사업자[소규모사업자(소령 §132 ④ 각 호)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소령 §143 ③)는 제외]가 영수증수취명세서(소법 §70 ④ 5호)를 과세표준확 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소령 §147의 2 ④) <i>→ 대상자 관련 개정규정은 2007. 7.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i>
	가산 세액	미제출·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 $\times$ 1%
사업장현황 신고 불성실가산 세 (소법 §81 ⑥)	사 유	의료업, 수의업 및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가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i>→ 200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i>
	가산 세액	미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 $\times$ 0.5%
공동사업장 등록 불성실가산 세 (소법 §81 ⑦)	사 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 로 등록한 경우 <i>→ 200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되, 2007. 1. 1 당시 소득세법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2007. 12. 31.까지 해당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 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i>

		②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소령 §147의 4) → 2007. 1. 1.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동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액	① : 미등록·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0.5% ② : 미신고·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0.1%
무기장가산세 (소법 §81 ⑧)	사 유	사업자[소규모사업자(소령 §132 ④ 각 호)는 제외]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
	가산세액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20\%$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소법 §81 ⑨)	사 유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소법 §160의 5 ① 1호)’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소법 §160의 5 ① 2호)’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200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가산세액	①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 0.5% ②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0.5%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가산세 (소법 §81 ⑩)	사 유	신용카드가맹점이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2007. 7. 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액	$\text{Max} \left[\begin{array}{l} \text{①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 \times 5\% \\ \text{② 건별 5,000원} \end{array} \right]$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소법 §81	사 유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⑪)		→ 2007. 7. 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 세액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times$ 0.5% ②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text{Max}(\text{㉠}, \text{㉡})$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 $\times$ 5% ㉡ 건별 5,000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소법 §81 ⑫)	사 유	기부금필요경비산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소득세법 제16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단, ②의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보고서 미제출가산세 또는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
	가산 세액	①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times$ 1% ②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 $\times$ 0.1%
기장불성실 가산세 (소법 §115)	사 유	법인(중소기업 포함)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가산 세액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미기장(누락)소 득금액}}{\text{양도소득금액}} \times 10\% \text{ (단,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 0.07\%)$
원천징수납 부 불성실가산 세 (소법 §158)	사 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가산 세액	$\text{Min} \left[\begin{array}{l} \text{Max} \left[\begin{array}{l} \text{① 미납부} \cdot \text{미달납부세액} \times \text{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times 0.03\% \\ \text{② 미납부} \cdot \text{미달납부세액} \times 5\% \end{array} \right. \right. \\ \left. \text{③ 미납부} \cdot \text{미달납부세액} \times 10\% \right] \end{array}$
납세조합 불납가산세 (소법 §159)	사 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	미납부·미달납부세액 $\times$ 5%

	세액	
--	----	--

V.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 세 (부가법 §22 ①, §28 ③)	사 유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미등록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 한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명의등록 : 사업자가 타인(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되, 사업자의 배우자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자는 제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2007. 1. 1. 이후 최초로 개사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가산세 액	①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 (단, 간이과 하는 예정신고기간 × 세자는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 1% 공급대가의 간)까지의 공급가액 0.5%)
		② :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단, 간이과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 세자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1% 공급대가의 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 0.5%)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등 가산세 (부가법 §22 ②)	사 유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 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②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미제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액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 세 (부가법 §22 ③)	사 유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세금계산서 미교부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금계산서 가공발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 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③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 액	공급가액(단, ②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 실가산세 (부가법 §22 ④)	사 유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③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②의 부실기재분은 제외)
	가산세 액	공급가액 × 1%(단,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 실가산세 (부가법 §22 ⑤)	사 유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와 함께 제출시는 제외) 및 부실기재(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한 경우 ③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 :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액	①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 1% ②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 1% ③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 × 1%
수입금액명 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사 유	변호사업 등의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미제출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

(부가법 §22 ⑥)	액	$\times 0.5\%$
영세율과세 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가법 §22 ⑦)	사 유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 액	무신고·미달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times 1\%$
대리납부불 이행 가산세(부가 법 34 ②)	사 유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액	미납한 대리납부세액 $\times 10\%$